

유형		지원내용								
I 유형 (소득연계)		· (지원대상) 소득 8분위 이하 · (지원금액) 소득분위(구간)별 차등 지원(연간 지원금액)								
		기초	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분위
		520만원	520만원	520만원	390만원	286만원	168만원	120만원	67.5만원	67.5만원
		· (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)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,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※ 단, 신·편입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								
II유형	대학자체 노력연계	· (지원대상)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하되, 저소득층 우선 지원 ※ 대학 등록금 동결·인하 및 장학금 유지·확충노력 인정규모에 따라 대학별 지원됨								
	지방인재 장학금	· (지원대상)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가이드라인(내신 또는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) 준수 · (지원대상) 입학성적 우수자(내신 또는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) 또는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· (지원내용) 등록금 전액 · (계속지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)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,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								
다자녀 (셋째자녀 부터 지원)		· (지원대상) ‘14년 이후 입학자 중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(단, ’93.1.1이후 출생자에 한함) · (지원금액) 연간 450만원(단, 기초~2분위는 연간 520만원 지원) · (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)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,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※ 단, 신·편입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								

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

1.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 로그인 (공인인증서 필요)하여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·재산 조사를 위해 반드시 가구원*의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* 신청학생이 미혼인 경우(부모 모두), 기혼인 경우(배우자)

2.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근거 및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?

- 정부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·재산 파악을 위한 것으로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」에 따라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가 한명이라도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득·재산 조사가 불가하므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3. 재학생은 왜 1차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? 만약에 1차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토록 하여 학생·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2차에 신청가능하나 “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구제신청서”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및 지방인재장학금 제도 개선

1. C학점 경고제는 무엇인가요?

- C학점 경고제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적용되며, 성적이 70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2. '17학년도 지방인재장학금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지방인재장학생 신규선발 성적기준을 내신 또는 수능(2개 영역) 2등급에서 '17학년도부터 3등급으로 완화하였으며, 지방인재장학생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지원 성적요건을 85점에서 80점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- 또한 자율육성 인재 선발비율을 30%에서 50%로 확대하여 다양한 우수인재 선발 및 지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 하였습니다.

3. '17학년도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?

- '17. 1학기에 선발된 지방인재장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드리며, 계속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'17. 2학기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합니다.

4. '16학년도에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. '17학년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'15~'16학년도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최대 2년간 (4학기) 지원받을 수 있으며, '17학년도부터 계속지원기준은 성적 80점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입니다.

소득분위(구간) 경계값 사전공표 및 소득분위 산정

1. 소득분위(구간)는 무엇인가요?

- 국가장학금,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지원 사업 신청자의 경제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0분위까지 나눈 것입니다.

< '17. 1학기 소득분위(구간) 경계값 >

(단위 : 원/월)

분위(구간)	기준 중위소득대비 비율	경계값*
1분위(구간)	30%	1,340,214(이하)
2분위(구간)	70%	3,127,166(이하)
3분위(구간)	90%	4,020,642(이하)
4분위(구간)	110%	4,914,118(이하)
5분위(구간)	130%	5,807,594(이하)
6분위(구간)	155%	6,924,439(이하)
7분위(구간)	180%	8,041,284(이하)
8분위(구간)	220%	9,828,236(이하)
9분위(구간)	290%	12,955,402(이하)
10분위(구간)	-	12,955,402(초과)

* 소득인정액으로 소득+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
※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

2.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?

-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.
- 이것은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으로 '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47만원(4인 가구 기준)으로 '16년 대비 7.6만원 인상(1.73% ↑)되었습니다.

3. '17.1학기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연계하여 소득분위(구간) 경계값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인가요?

- '15년부터 금융재산, 부채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소득·재산 조사를 실시하였으나, 객관적인 경계값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 학생들 간 상대적인 기준으로 경계값을 설정하여 신청 종료 이후 소득분위(구간) 경계값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소득분위(구간)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.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'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경계값을 산정하여 사전공표함으로써 소득분위(구간)산정에 대한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4. '17.1학기부터 소득분위(구간) 경계값을 사전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(구간) 경계값이 공표됨에 따라 학생들이 사전에 본인의 소득분위(구간)를 예측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학자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

5. 소득분위(구간) 산정시 반영되는 소득·재산은 무엇인가요?

- 소득·재산 조사 대상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*이며, 반영되는 소득·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(소득)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 소득 등
 - (일반재산) 건축물, 주택, 아파트, 주택·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(전세금 포함) 등
 - (금융재산) 어음, 주식, 국·공채 등 유가증권, 예·적금, 보험, 부금 등
 - (자동차)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 등

* 학생이 미혼인 경우(부모 모두), 기혼인 경우(배우자)

6.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
- 소득인정액*이란 신청인과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의 '소득 평가액'과 '재산의 소득환산액'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.

* 소득인정액 = 소득 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소득평가액	재산의 소득 환산액	소득 환산율
소득-소득공제	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 × 월 소득환산율	일반재산 : 월4.17%/3 승용차 : 월4.17%/3 금융재산 : 월6.26%/3

- 학자금지원 신청인 및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.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세청, 행정자치부, 국토교통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671종(15년 12월 기준)의 소득·재산 자료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.
- 매 학기 학자금지원을 위해 사전 공표되는 소득분위(구간)에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여 소득분위(구간)가 산정됩니다.

7. 조사된 소득·재산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나요?

- 소득분위(구간)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☎1599-2000)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이의신청은 국가장학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의 변동, 소득증감, 재산 증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8.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서비스는 무엇인가요?

-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란 신청인의 최근 4개 학기의 소득인정액 정보를 활용하여 이번 학기 신청인 가구의 소득 분위(구간) 정도를 예측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
- 국가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가장 최근 학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이번 학기 소득분위(구간)를 예측 가능하며,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 가능 금액 및 이용 가능한 학자금대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과거의 소득·재산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소득분위(구간)는 변동 될 수 있으며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및 국가장학금 신청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 도입

1. '17학년부터 도입되는 국외 소득·재산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- 국외 소득·재산 신고대상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('17년 이전 입학자도 포함)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*입니다.

* 신청학생이 미혼인 경우(부모 모두), 기혼인 경우(배우자)

-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('17년 이전 입학자도 포함)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반드시 “재외국민 특별 전형입학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.

【도입 시 개선효과(예시)】

“ '17년부터 가구원의 국외 소득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득인정액 산정 ”

[시행 前] '16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○○○의 부모님 모두 해외로 파견된 근로소득자로 해외에 300만 원, 국내에 150만 원의 소득이 있으나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 범위가 국내 소득·재산 정보로 제한적임에 따라 소득인정액 150만 원으로 소득분위(구간) 1분위로 확정

[시행 後] 재외국민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 시행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외 소득·재산과 국내 소득·재산 조사 결과가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므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 ○○○ 가구의 국외 소득 300만 원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 450만 원으로 소득분위(구간) 4분위로 실질적인 소득인정액 산정

2. 국외 소득·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국외 소득·재산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(학생)에게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가 통지됩니다.
- 신고대상자는 문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(2주)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·재산 금액 및 증빙서류를 신고·제출해야 합니다.

*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·불성실 신고 시 해당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3. 국외 소득·재산 신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- 소득, 재산, 부채의 신고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국외 소득·재산 신고 시 신고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. ‘신고서 작성 가이드’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>자료실>소득분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- ① 소득: 근로소득·사업소득(농업, 임업, 어업소득 포함)·재산소득(임대이자, 연금소득) 및 그 외 소득(근로·사업·재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)
- ② 일반재산: 토지·건축물·주택
- ③ 금융재산: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·저축성예금·주식·채권·보험
- ④ 부채: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

4. 국외 소득·재산을 신고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나요?

- 국외 소득·재산 신고내역에 대해 재단에서 확인된 대상자에 한하여 국내 소득·재산 조사가 실시됩니다.
- 즉 신고 결과 적합자에 한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 소득·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국내 소득·재산과 국외 소득·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

5. 국외 소득·재산 신고 후 소득분위 확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?

- 소득분위(구간)는 국외 소득·재산 신고 후 약 6~8주 내에 확정됩니다. 다만, 이는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국외·소득 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소요되는 통상적인 산정 기간을 말하며, 미신고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시 제재

1.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?

-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시 기 수혜 받은 국가장학금은 환수되며 최대 2년 이내에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.

2. 어떤 경우에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나요?

- 대학이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성적·출석 조작, 학업의사가 없는 학생 허위입학 등 학사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거나,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 혼용집행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있으며,
- 학생이 가구의 소득을 탈루하거나,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를 위·변조 또는 성적·출석 조작 등 대학의 부실 학사관리에 학생이 동조해 국가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.
- 다만, 단순 오선발(성적기준 오적용 등)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3. 부정수급 등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대학은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- 현재까지 부정수급 등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대학은 없으며, 향후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대학이 발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.
- 또한 신입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한 대학 공지 이후 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할 것입니다.